

미소와 행복을 함께하는 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

제736호 2017. 8. 21.(월)

안내문

- ◇ 공보의 게재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, 절차 및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◇ 공보는 매월 10일, 20일, 30일에 발행(10일 단위)되며 공보발행 방식이 전자식 형태로 전환되어 서구청 홈페이지(www.dgs.go.kr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※ 서구청 홈페이지 접속 ⇒ 행정정보⇒ 서구소식⇒ ‘서구공보’에서 열람
- ◇ 공보발행 절차
 - 【원고접수마감】 매월 8일, 18일, 28일(D-2)
 - 【편집】 접수마감 익일(D-1)
 - 【게시】 발행일(D일)
- ◇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“다음날”발행되며, 접수마감 이후 접수분에 대하여는 다음 호에 게재됨으로 특별히 게재되어야 할 원고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◇ 원고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송부하여 주시고, 각종 조례, 규칙, 고시, 공고 등의 업무는 공보 발행 일자를 참조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회람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◀ 대구광역시 서구 ▶

고 시

Ⓞ 도로명주소 고시

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 - 33호

3

공 고

Ⓞ 개별주택가격(안)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

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-1359호

5

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 - 33호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따라 건물등에 부여,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8월 21일

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

○ 도로명주소 부여 :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53길 50 외 2건

소재지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○ 도로명주소 폐지 :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53길 50

소재지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663-3071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(별지)

도로명주소부여조서

소재지		도로명주소 부여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고시일
지번주소	도로명주소			
비산동 1255-4	달서천로53길 50	2017.8.16.	달서천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	2010. 4. 7.
상리동 130, 131	가르뱅이로20길 20-1	2017.8.16.	가르뱅이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	2010. 4. 7.
상리동 264	가르뱅이로7길 32	2017.8.16.	가르뱅이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	2010. 4. 7.

도로명주소폐지조서

소재지		도로명주소폐지일	폐지사유
지번주소	도로명주소		
비산동 1255-4	달서천로53길 50	2017.8.16.	건물멸실

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-1359호

개별주택가격(안)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

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(안)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·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8월 11일

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

1. 열람

- 기 간 : 2017년 8월 11일 ~ 8월 31일
- 대 상 : 2017.6.1.~ 5.31.까지 토지 분할, 합병 및 신.증축 주택 등
- 장 소 : 서구청 홈페이지, 구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동주민센터
- 열람내용 : 개별주택가격(토지, 건물 일체가격)

2. 의견제출

- 기 간 : 2017년 8월 11일 ~ 8월 31일
- 제출사항 : 용도지역 및 주거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
- 제출자 : 주택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
- 제출처 : 구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
- 제출방법
 -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

- 인터넷 ‘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(<http://kras.go.kr> 일사편리)’에서 제출

3.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

-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 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

4. 문의 : 서구청 세무과 과표담당 (☎663-2381~ 5, FAX 663-2379)